##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007 제출연월일: 2024. 9. 13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선을 건조·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·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·장비·인력 등의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"어선의 건조"를 "어선의 건조 등"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1조,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(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등)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(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한다)하는 사업(이하 "어선건조·개조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"어선건조·개조업자"라 한다)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 조·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
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한 경우
- 4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 1항에 따른 건조검사(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 다)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
- 5.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 제12조의2(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
  - 어선건조 · 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·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·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
  -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·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

- 이 신설한다.
- ② 어선건조·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(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3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의2.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의 취소 제4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의2.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한 자
- 제4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의2 중 "제23조를"을 "제23조제1항을"로 한다.
- 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5.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 조업을 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어선 건조·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<u>어선의 건조</u>	제2장 <u>어선의 건조 등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(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등)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(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한다)하는 사업(이하 "어선건조·개조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"어선건조·개조업자"라한다)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제12조(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·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한 경우
  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 - 3.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 ·개조업을 한 경우
  - 4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 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(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 조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 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

<신 설>

제23조(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 제23조(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

- 5.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·개 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 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 건조 · 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.
- 제12조의2(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어선건조 · 개조업자에 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 조·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 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·개조업 진흥 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 개 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유지) (생 략)

<신 설>

제38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~ 4. (생 략)

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유지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	큰
과 같음)	
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	<u>:1</u>
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기	<u>भ</u>
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(	<u>별</u>
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은	<u>5</u> _
해당 어선의 선체・기관・설비	1]
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	<u>하</u>
여서는 아니 된다.	
세38조(청문)	_
	_
	_
	_
1. (현행과 같음)	
1의2.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ረ	<u>년</u>
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	
2. ~ 4. (현행과 같음)	
세43조(벌칙)	_
	_
	_
1. (현행과 같음)	
1의2.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	격
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청	

지 아니하고 어선건조 · 개조

2. · 3. (생략)

제4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~ 4. (생략)

4의2.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 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(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・ 기관・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하거나 설치한 자

5. ~ 10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제44조(벌칙) ①
1. ~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
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
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
<u>한 자</u>
3. ~ 4. (생 략)
4의2. <u>제23조제1항을</u>
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과태료) ①

업을 한 자
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5.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
	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
	건조ㆍ개조업을 한 자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